

주요 자원보유국(중국, 호주 등)의 자원세 현황 및 시사점

I. 들어가며

- 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자원보유국들이 자원 통제권 강화, 자원개발 이익 환수 등의 목적으로 자원국유화, 수출관세 인상, 로열티/세율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자원세, 호주 광물자원임대세 등 자원보유 국가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함

II. 주요 자원보유국의 자원세 현황

1. 중국, '자원세' 개혁

(1) 자원세 개요

- 중국 자원세(資源稅)는 각종 천연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역별 자원 분포 및 광물별 매장량에 따른 기업 이윤 분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내 광물 채굴 및 소금 생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세목임
 - 중국은 1984년 자원세를 도입하여 현재 원유, 석탄, 천연가스, 철 원광¹⁾, 비철금속 원광, 염류, 기타 비금속 원광 등 7가지 품목에 대해 자원세를 징수하고 있음

1) 아직 제련되지 않은 채굴한 그대로의 광석

(2) 자원세 개혁 과정

- 자원세 도입 이후 징수범위 확대, 징수방식 개혁, 과세수준 상향조정 등 자원세 세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1984년 도입 당시 목적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채굴 자원 등급 간 수익 조정, 지방 재정수입 확대 등에 있었음
 - (과세품목) 우선적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금속광물과 기타 비금속 광물은 차차 징수하기로 함
 - (과세방식) 실제 매출수입으로 하며, 광산기업의 이윤율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이익률 12% 이상 부분에 대해 징수
 - 1994년 1월 1일부터 **보편징수, 자원세 징수방법 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징수방식을 '종량정액제'로 변경함
 - (과세품목) 모든 광물과 광산으로 범위를 확대 시행하며 기업이나 개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징수를 실시함
 - (과세방식) 초과이윤율 과세방식에서 매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종량정액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음
 - 2007년 **내수가격 조절과 광물자원 보호**를 위하여 8월 1일부터 일부 광물에 대한 자원세 인상
 - (과세품목) 납, 아연, 구리, 텅스텐 등의 광물
 - (과세방식) 아연은 톤당 10~20위안, 구리는 톤당 5~7위안, 텅스텐은 톤당 7~9위안 부과
 - 2010년 **자원가격 급등으로 종량세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수부담이 지나치게 낮아 자원 부족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원낭비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서부지역 일부 자원의 과세 방식을 '종가정률제'로 전환
 - (과세품목) 2010년 6월 1일, 신장성(新疆省)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해 시범 시행 후 12월 1일 서부 내몽고성, 감숙성 등 12개 성으로 확대 시행
 - (과세방식) 종량정액제에서 가격에 의해 징수하는 **종가정률제(세율 5%)**로 전환

- 2011년 4월 1일부터 희귀자원 보호를 위해 희토류²⁾ 자원세를 10~20배 상향 조정
 - 상향 조정 이전, 희토류는 "기타 비철금속 원광" 항목으로 분류되어, 톤당 3위안의 자원세가 부과되었음
 - 상향 조정 이후, 경희토류(Bastnaesite 등)³⁾는 톤당 60위안, 중희토류(Xenotime 등)는 톤당 30위안의 자원세 부과

(3) 향후 자원세 개혁 전망

- 2011년 7월 중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제작한 <자원세 조례> 수정본 초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하반기 중에 실시될 전망
 - (자원세 개혁 시범실시 효과) 2011년 상반기 자원세 징수액은 총 307.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4.9% 증가하는 등 서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한 자원세 개혁의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원세 개혁 주요 내용) 종량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바꾸는 방향을 골자로 하며 과세품목을 원유와 천연가스 외 기타 자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전국 범위로 전면 확대하고자 함
 - (원유, 천연가스) 세율을 현재 5%에서 5~10%로 증가하고 석유계통 전면으로 확대
 - (석탄) 중국 에너지원 중 70%를 차지하는 석탄의 자원세 개혁은 일단 보류되어 기존의 종량세 부과원칙을 유지하되 종량 징수 정액이 소폭 상승하여 기존의 톤당 0.3~5위안에서 0.3~8위안이 될 것으로 보임
 - (과급효과)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중국 내 자원개발기업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 자원개발기업이 세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할 경우 중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2) 희토류는 란타넘(La, 원소번호 57)부터 루테튬(Lu, 원소번호 71)까지 란탄계열(lanthanoids) 15개 원소와 스칸듐(Sc, 원소번호 21), 이트륨(Y, 원소번호 39)을 포함한 17개 원소를 총칭하며 첨단 IT산업에 소량이지만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움

3) 희토류 원소 가운데 란탄계열 원소들은 크게 2개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원자 번호 57-63(La-Eu)까지의 7개 원소를 경희토류, 원자번호 64-71(Gd-Lu)까지의 8개 원소를 중희토류로 분류

< 중국 자원세 연혁 >

연도	내용	목적
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세 징수 시작 ○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만 세금 납부대상 ○ 초과이익율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12% 이상 부분에 대해 징수 	지역별 자원 분포 및 광물별 매장량에 따른 기업 이윤 분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원세 조례> 실시 이후, 징수범위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비금속, 철금속, 비철금속, 염류 등 7가지 품목으로 확대 ○ 징수방법은 광산품의 매출량에 따라 징수 (종량정액제) 	전국적인 세무개혁을 계기로 자원세 징수방법 합리화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서, 칭해, 내몽고, 산서 등 5개 성 석탄 세율 상향 조정 	탄광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성이 떨어진 영세 탄광을 폐광시키는 등 석탄 업종 구조조정의 일환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세율 개혁이 12개 성으로 확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특별 수익금” 추가 징수 (배럴 당 40달러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해 세금 징수) ○ 호북, 호남 등 13개 성의 석탄 세율 상향 조정 	사회의 부(富)가 일부 자원 업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부터 납, 아연, 구리, 텅스텐 세율 상향조정 (세율 3~6배 상승) ○ 점결탄 세율을 톤당 8위안으로 인상 ○ 고급 아연과 은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해당 산업의 생산과잉 억제, 경제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차원의 고려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천연가스): 신장(新疆)을 비롯한 서부 12개 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매출량을 바탕으로 징수하는 방법(종량정액제)에서 가격에 의해 징수하는 방법(종가정률제)으로 전환 ○ 세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효과, 서부 대개발 건설 자금 마련 ○ 일부 기업의 “싼 값으로 자원을 수출”하는 행위 억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원세 조례> 수정본 제정 ○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종가정률’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 세율은 5%에서 5~10%로 인상 ○ (석탄) 톤당 0.3~5위안에서 0.3~8위안으로 인상 ○ (희토류) 자원세 10배 이상 인상 (4월1일) ○ 물, 금 등 자원도 세금 징수 대상에 포함(미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가격의 빠른 상승으로 인해 매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며 현실에 맞지 않음 ○ 부족한 희귀 자원 보호 (물, 금, 희토류 등)

자료원: 중국 언론 등

2. 호주, '광물자원 임대세' 도입

- 호주는 2012년 7월부터 자국 내 자원개발 순이익금의 30~4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광물자원 임대세(MRRT, Mineral Resources Rent Tax)'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음
 - 2010년 Rudd 총리는 법인세 외에 40%의 천연자원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뒤 호주 광산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사임한 바 있음
 - (도입 목적) 자원세 징수를 통해 신규 자금을 조성하여 도로, 철도, 항구, 전력 공급망 등 인프라 건설과 법인세 인하에 사용
 - (적용 대상) 기존안에 따르면 자원세는 원유, 콘덴세이트, 천연가스, 탄층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우라늄, 철광석을 포함한 원자재, 비금속, 다이아몬드 및 기타 보석용 원석 등 고수익 고갈성 자원개발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었음
 - 호주 Gillard 신임총리는 기존안 대비 대폭 완화된 신규초안에 대해 광산업계(BHP, Rio Tinto, Xstrata 3사)와 합의하였고, 최종안에 도달하면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 (신규초안 내용) 철광석, 석탄에 대해 투자수익률(ROI)이 호주 장기채권금리(현행 5% 수준)보다 7%p 이상 상회할 경우 이익의 30% 세율을 부과하고 석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기존안대로 40% 세율을 적용함
 - 신규초안은 기존안 대비 적용 대상 광물 및 적용 세율이 축소되었으나, 호주 광산업체들은 현재 30% 수준의 법인세 외에 추가로 자원세까지 부담해야 함
 - (기대효과) 호주 정부는 본 법안이 발효될 경우 최초 2년간 77억 호주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 중남미, 新자원민족주의의 일환으로 로열티 부과

- 200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석유·가스 자원보유국들이 자국 국영기업의 석유자산 지분을 늘리고, 외국 자원개발기업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 신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취함
 - 베네수엘라는 2005년,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로열티는 16.6%에서 33.3%로, 법인세는 34%에서 50%로 대폭 인상함
 - 볼리비아는 2006년 천연가스 1일 평균생산량이 1억cf⁴⁾를 초과할 경우 이윤의 82%(종전 5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
 - 2006년 중남미 대선에서 친미 혹은 중도, 우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반미, 자원민족주의가 잠시 주춤함
 - 그러나 2007년 에콰도르가 OPEC에 재가입하고, 석유법 개정으로 석유 생산에 따른 초과수익 대부분을 정부가 회수하는 등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가세함
 - 에콰도르는 2007년 석유회사들이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수익의 50%를 에콰도르 정부에 보장해야 한다는 법안을 가결하고, 2008년에는 초과이윤세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
- 최근 광물자원가격의 급등으로 중남미 광물자원보유국 정부 역시 자원개발기업에 수익 환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칠레는 2010년 10월, 칠레 지진 복구 자금 확보 차원에서 ‘광업 로열티 법’을 개정하여 과세 기준을 강화함
 - 법개정으로 연간 판매량 5만톤(구리환산톤) 이상의 광산업체 로열티가 영업이익 4%에서 2010~2012년 동안은 4~9%, 2018년 이후에는 최대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4) cf(cubic feet, 입방피트)는 가스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천연가스 1cf는 석유 0.178205 배럴에 해당

III. 시사점 -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 중국, 호주 등 자원세를 인상한 국가에 진출한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해외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자원개발 투자 위축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자원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자원개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 호주 철광석/석탄, 중국 희토류/비철금속 등 자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호주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유럽과 함께 주요 수출대상국가 중 하나임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6%,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국가로 한국은 對중국 희토류 수입 및 對일본 반제품, 완성품 수입 의존도가 높음
 - 희토류 자원세 인상은 희토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중국이 최근 희토류 자원의 보호 조치(희토류 생산기업 구조조정, 생산량 및 수출규모 통제, 수출관세 인상 등)를 취한 후 희토류 가격이 급등한 바 있음
 - 한국은 LCD, LED 등 첨단 IT 산업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 상승 시 관련 제품 생산과 수출에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수출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산업의 생산비를 높여,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원자재 수입 가격 10% 상승 시 전 산업 생산비가 평균 1.2%, 제조업은 1.7% 높아짐
 - 특히 주요 수출산업인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산업은 각각 2.2%, 0.8%, 0.6%의 생산비 상승이 초래되는 것으로 추정

작성 : 책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이해청 (3779-6670)
 hcleee@koreaexim.go.kr